



대중국 인삼 신자원식품 수출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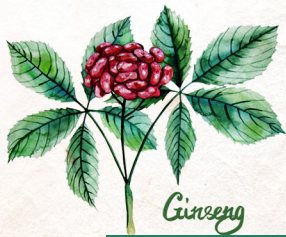
대중국농식품수출적용기술모델개발사업단
인삼모델개발사업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중국 인삼 신자원식품 수출 매뉴얼



대중국인삼수출적용기술모델개발사업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031-670-4830
<http://www.webofginseng.com>





Prefau

머 리 글

국내 인삼제품 생산자들은 해외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에 관심이 높지만, 수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낮고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1차적으로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인삼식품에 대한 수출과정을 연구, 실증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삼 일반식품 (신자원식품)에 대한 생산, 수출, 통관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니, 인삼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본 매뉴얼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현재 인삼제품의 중국 수출을 수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 개인적 네트워크나 중국 현지 수입통관 브로커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비관세장벽이 높은 인삼제품의 특성상, 중국 내 수입통관 과정과 필요서류의 준비에 있어서 전적으로 중국 브로커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요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통관 실패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지속적 수출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매뉴얼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작성 당시 관련 법규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발간 후 중국 법규의 변화나 수출 상황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또한, 본 매뉴얼은 각 수출 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제시되었습니다.

본 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이 국가 연구개발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의 상업적 활용 및 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2016년 7월

 중앙대학교 한재홍



차례

제1부 인삼 신자원식품 관련 법규

1. 신자원식품의 정의	12
■ 신자원식품 원료	
2. 인삼 신자원식품	13
■ 중국내 인삼의 위치:중약재,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 국내 인삼제품의 현황	
3. 중국 식품 관련 법규	15
■ 식품안전법	
■ 일반식품 중국 수출 관련 법규	

제2부 인삼 신자원식품 중국 수출 과정

4. 중국 인삼 일반식품의 생산 현황	20
■ 중국의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생산 동향	
5. 중국 수출용 인삼 일반식품의 개발	21
■ 개발 프로세스	
6. 인삼 일반식품 수출통관 프로세스	23
■ 수출 준비과정	
■ 수출 통관과정	

제3부 인삼 신자원식품 수출 및 예비 라벨 심사 사례

7. 수출 사례	28
■ 중국 수출용 인삼음료 개발	
8. 예비 라벨 심사 과정	35
■ 개발제품 고려미인 라벨심사	
■ 개발제품 이지대디 라벨심사	
9. 인삼 신자원식품 수출 유의점	38

표 1. 신자원식품원료 안전성 심사관리 방법의 단계별 변화 과정	12
표 2. 인삼의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 내용	14
표 3. 일반식품 중국 수출관련 과정별 적용 법규	16
표 4. 식품 유형별 규격 및 제조 국가 표준	17

제1부
인삼신자원식품
관련법규





제1부 인삼 신자원식품 관련 법규

1. 신자원식품의 정의

중국 정부는 1990년 처음으로 중국에서 전통 식용습관이 없는

- ① 동물, 식물 및 미생물
- ② 동물, 식물 및 미생물에서 분리한 성분
- ③ 기존 구조가 변화된 식품 성분
- ④ 기타 신 연구개발한 식품 원료

등을 일정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료, 성분 및 원료를 신자원식품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후, 신자원식품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관련 법규는 여러 차례 수정되어 왔으며(표 1), 현재는 “신자원식품원료 안전성 심사관리 방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표 1. 신자원식품원료 안전성 심사관리 방법의 단계별 변화 과정

No	관련법규	실시 & 폐기일자	주요내용
1단계	식품신자원위생 관리방법	1987.8.18 실시 1990.7.27 폐기	위생부에서 허가하기 전에 샘플 포함한 시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단계	신자원식품위생 관리방법	1990.7.28 실시 2007.11.30 폐기	직접 소비자 대상의 완제품 식품에 대한 관리방법 기업별로 자체 생산제품을 신청하여 허가받아 생산, 신자원식품에 대해 치료효과 등 암시적 홍보를 금함
3단계	신자원식품 관리방법	2007.12.1 실시 2012.9.30 폐기	완제품 식품에서 식품원료로 변경, 위생부 공고로 대체 위생부에서 공고한 신자원식품(원료)은 식품가공에 사용 가능
* “인삼 신자원식품 기준 공고 (2012.8.29)”를 통해 그동안 약재로만 분류 되었던 인삼에 대해 인공재배된 5년 이하 인삼은 신자원식품(식품원료)으로 분류			
4단계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 ¹	2013.10.01 실시 ~ 현재	2007년 관리방법의 신자원식품이란 사실 식품원료에 대한 관리방법이었으나 명칭상 오해여지가 높음 또한 <식품안전법>의 실시에 맞춰 2013년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관리 방법으로 대체 *기존 신자원식품관리방법은 폐기

¹ <http://www.nhfp.gov.cn/sps/s3585/201311/e8dc7f4ec58444f8bbf32ec079d7e905.shtml>



1-1. 신자원식품 원료

2014년 8월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전 위생부)는 기존의 《신자원식품원료의 안전성 심사관리 방법》을 한층 더 강화하여 추진하고, 일반인이 중국 정부의 관련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검색하여 이용하도록 ‘2008년 이후 국가위생 및 계획 생육위원회가 공고, 비준한 신자원 제품(현재 ‘신자원식품원료’)의 목록’ 및 공고, 결재, 회신의 형식으로 동의한 ‘신자원식품 원료, 일반식품 관련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다.²

- ① 2008년 이후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공고,
비준한 신식품 원료(신자원 식품)목록: 인삼(인공재배)포함 81종
- ②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공고, 결재, 회신의 형식으로
동의한 식품 원료목록: 42종
- ③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목록: 8속 28종의 미생물
- ④ 영유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목록: 미생물 5종

본 매뉴얼에서는 전체 목록을 포함하지는 않으나, 인삼을 포함하는 다양한 식품 원료 및 클로렐라, 낫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인삼 신자원식품

2-1. 중국 내 인삼의 위치: 중약재,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국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삼제품이 생산 소비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소비자에 의해 인삼제품이 소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인삼이 의약품(중약재)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인삼음료, 드링크제 등과 같은 식품으로의 소비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삼을 의약품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중국 일반인들은 인삼이 자기 체질에 맞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법규적으로 보면, 국내 인삼제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한약재)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최근까지도 인삼은 의약품과 보건식품(국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으로만 규정되어 생산, 판매되어 왔다.

² <http://www.nhfp.gov.cn/sps/spgg/201408/dc45891b39194f6d9091fc38096e1d42.shtml>



한편, 2012년 8월 29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위원회에서 중국의 자국 인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삼 신자원식품에 관한 공고 (2012년 17호)를 발표하였다. 이 공고내용에 의하면 인삼은 신자원식품원료로서 일반식품에 적용가능하며 인삼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도 일반식품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표 2).

즉, 이전까지는 인삼은 보건의약품이나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중국도 인삼을 공고에 정한 기준을 따르면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인삼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정한 것이다.

표 2. 인삼의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 내용³

중문 명칭	人參(人工种植)인삼(인공 재배)
학술 명칭	<i>Panax ginseng</i> C.A.Meyer
기본 정보	대상: 5년 및 5년 이하의 인공 재배 인삼 종속: 두릅나무과, 인삼 속 식용 부위: 근 및 근경
식용량	≤3g/일
기타 상황에 대해 필요한 설명	1. 위생 안전 지표는 반드시 중국의 관련 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임산부, 수유기의 여성 및 만 14세 이하의 아동이 식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라벨 또는 설명서에 반드시 부적절한 대상군 및 식용 제한량을 표기해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인삼제품은 중국 일부지역에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대부분 소비되고 있으며, 인삼 일반식품에 대한 중국 내 생산 및 소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중국의 대도시에서 인삼을 포함한 음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³ <http://www.moh.gov.cn/zhuzhan/gonggao/201304/b7e1cd05d63d448faa3c9cc2018ef8b7.shtml>



본 매뉴얼에서는 인삼 일반식품의 생산과 수출은 중국의 식품안전법과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 기준에서 중국 수출 인삼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인삼 일반식품의 수출 사례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서는 인삼제품을 포함한 수입품(특히, 농식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며, 향후 이러한 난관은 중국의 자국제도가 국제화됨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국내 인삼제품의 현황

매뉴얼 작성과 함께 중국 신자원 식품원료로서 지정된 인삼을 사용하여 중국 일반식품으로 적용 가능한 국내 제품을 평가하여 보았을 때(2015년 4월 기준), 13개 주요 제조사 254종의 인삼제품 중 중국 일반식품 국가표준 및 공고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수출 가능한 인삼 일반식품은 찾을 수 없었다. 그 주요 이유로는

- ① 국내 대부분의 제품이 6년근 인삼을 원료로하여 생산되거나 연근 표시가 없어서, 5년근 이하 인삼을 원료로 지정한 신자원식품법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 ② 영지, 천궁, 황지 등의 한약재를 첨가하여 일반식품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③ 연근 표시가 없는 제품
- ④ 산삼배양근 사용 제품
- ⑤ 하루 섭취량 3그램 이상 제공

등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지 않은 제품 등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중국 식품 관련 법규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도 식품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의 중국 국내 식품관련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식품 안정성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국가 표준 GB/T15901-1994 〈식품공업전용용어〉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가공식품, 반 가공식품 및 가공하지 않는 식품을 비롯해 사람이 식용하거나 마실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연초 및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은 제외된다.



또한,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이란 사람의 식용 또는 음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완제품, 원료 및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물품을 의미하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1. 식품안전법

중국 식품법의 기본이 되는 식품안전법은 2009년부터 시행된 법을 최근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⁴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의 저장 및 운송, 식용농산물, GMO식품의 표시, 농약, 건강기능식품, 대중매체의 책임, 법률적 책임 등 여러 방면에서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인삼제품의 경우 농약과 건강기능식품 분야 개정 사항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일반식품 중국 수출 관련 법규

아래 표 3은 인삼 신자원식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식품 관련 중국 법규를 설명한다.

표 3. 일반식품 중국 수출관련 과정별 적용 법규

일반식품	1. 수입식품등록	1. 2012년 제55호 〈수입식품 수출입상 등록 관리 규정〉 및 〈식품수입기록 & 판매기록 관리 규정〉 발표 관련 공고
	2. 유형	1. 식품 분류 체계 (GB2760-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 표준 부록 F)
	3. 원료	1. 중국 식물 성분표 2. 위법감발 [2002] 51호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를 한층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 3. 신자원식품 원료, 일반식품 관련 목록 4. GB2760-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 5. GB 14880-2012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 6.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균종목록》의 인쇄 발행에 관한 위생부판공청의 통지 7. 영유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균종목록 발표에 관한 공고(2011년 제 25 호)
	4. 포장	1. 질검식검함(2007) 155호 '캡슐 등 제품의 시장 진입 범위 잠정 제외에 관한 지시'에 대한 회신
	5. 라벨등록	1. 제19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출입검검험검역국령 '수출입식품 라벨 관리방법' 2. GB7718-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예비 포장 식품 라벨 통칙 3. GB28050-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예비 포장 식품 영양 라벨 통칙 4. QBT 4003-2010 식용 향미료 라벨 통용 요구 6. 통관 1. 총국령 제144호 국가 질량감독검검험검역총국〈수출입식품 안전 관리방법〉

⁴ <http://www.sida.gor.cn/ws01/d11196/118041.html>



중국 수출용 인삼 일반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 ① 먼저 위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수출 인삼제품의 해당 일반식품 유형의 분류를 정하고,
- ② 제조 공정 및 표준에 따라서 각 유형별의 제품은 아래 표에 제시된 국가표준, 지방표준, 산업표준 등에 명시된 제조방법 및 규격에 맞춰 생산을 해야 하며 이에 부합되는 제품 만이 생산허가(중국현지 생산제품 경우) 또는 통관 허가(수입제품 경우)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표 4. 식품 유형별 규격 및 제품 국가 표준⁵

식품 분류번호	식품 유형(명칭)	국가표준 GB
1	우유 및 우유 제제품 (13.0 특수 선식용 식품과 관련되는 품종은 제외)	GB 13102-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연유, GB 19301-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생우유, GB 19302-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발효우유, GB 19644-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유분, GB 19645-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살균우유, GB 25190-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멸균우유, GB 25191-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조미우유, GB 25192-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치즈
2	지방, 오일 및 유화지방 제품	GB 15196-2003 인조크림위생표준 GB 19646-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생크림 및 무수크림
3	냉동 음료 제품	GB/T 31114-2014 냉동제품 아이크림
4	과일, 채소(당이뿌리류 포함), 콩류, 식용균,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등	GB 2712-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콩 제품 GB 19300-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견과류 제품
5	카카오 제품,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카카오 버터로 대체해 제조한 초콜릿 및 그 제제품 포함), 캔디류	GB 9678.2-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초콜릿 및 기제품
6	곡식 및 곡식 제품. 쌀, 밀가루, 잡곡, 전분 등 포함(07.0 베이킹 식품과 관련되는 품종은 제외)	GB 2711-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글루텐 GB 19295-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급속 냉동 밀/쌀가루 제품
7	베이킹 식품	GB/T 20981-2007 빵, GB 19855-2005 월병 GB/T 20980-2007 쿠키 GB/T 20977-2007 케이크통치
8	고기 및 고기 제품	GB/T 19480-2009 고기 및 고기제품 술어 GB/T 9959.2-2008 신선냉동고기

⁵ WWW.katil.net, 인삼제품 수출 관련 중국 법률 자료집



식품 분류번호	식품 유형(명칭)	국가표준 GB
9	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생선류, 갑각류, 조개류, 연체동물류, 극피동물류 등의 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 포함)	GB 10133-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수산조미식품
10	조류의 알 및 알 제품	GB/T 9694-1988 피단 GB/T 23970-2009 루단 GB 2749-2003 알제품위생표준 GB 2748-2003 신선알제품위생표준
11	감미료(벌꿀 포함)	GB 13104-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식용 탕 GB 14963-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꿀 GB 15203-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전분 탕
12	조미료	GB 2718-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양조장
13	특수 선식용 식품	GB 10765-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아배합식품 GB 10770-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통조림보조제품 GB 10770-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곡물보조제품
14	음료류	GB10789-2007 음료통치 GB19297-2003 과일야채음료위생표준 GB17325-2005 식품공업용농축과일야채즙위생표준 GB 19298-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포장음용수
15	주류	GB 2757-2012 식품안전국가표준 증류주 및 기배합주 GB 2758-2012 식품안전국가표준 발효주 및 기배합주
16	기타류 (01.0~15.0와 관련되는 품종은 제외)	GB 17401-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팽화식품

제2부
인삼 신자원식품
증류수출과정





제2부 인삼 신자원식품 중국 수출 과정

4. 중국 인삼 일반식품의 생산 현황

2009년 중국 시장조사 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인삼 가공기업은 5000여 개 내외로 길림성 지역에 61%, 뒤를 이어 흑룡강성이 16.5%, 요녕성 지역에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기준 자산규모가 5,000만 위안 (약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인삼 가공제품에 대한 표준화와 전문화된 원료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홍삼 혹은 백삼의 원료기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삼원료는 인삼 수집을 통해 몸체가 크고 손상이 적은 인삼을 보선삼, 활성삼으로 판매한 후 나머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홍삼 혹은 생쇄삼으로 가공하고 있다.

인삼 가공품의 80% 이상이 기초가공 제품(건조, 분말)이, 나머지 20%만이 정밀가공(인삼의약품, 인삼보건품, 인삼차류, 인삼식품, 인삼주, 인삼화장품)방식으로 생산된다. 정밀가공 제품에서는 인삼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반면, 인삼식품의 비중은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아직까지 인삼을 식품원료로 인지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 정부의 인삼 산업 육성 정책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잘 알 수 있다.

4-1. 중국의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생산 동향

2012년 위생부가 5년근 이하 인삼을 식용원료로 비준을 했으나 실제로 식품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는 중국 질검총국에서는 아직 제도상으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6개 식품분류에 속하지 않는 인삼일반식품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제품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지 생산 공장에서는 인삼 일반식품이 식품 생산허가증 발급 식품분류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료(인삼음료), 기타식품(홍삼절편 등) 등으로 신청을 하여 질검총국으로부터 생산 허가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위생부, 질검총국 부처 간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비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인삼함유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산업 현장에서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중국 수출용 인삼일반식품의 개발

5-1. 개발 프로세스

연구결과 수출적합 인삼제품의 개발은 아래 5단계 프로세스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수출제품 개발의 특성상 이러한 과정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1) 1-2단계: 유형선정 및 규격확인

중국 내 생산자의 경우, 국가 표준 GB 14880—2012〈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과 식품생산허가증 (QS)심사규정에 따라 개발 제품에 대한 식품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공정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생산자의 경우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규격은 유사하지만, 인삼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유형 및 제품명이 중국 법규와 다르기 때문에 제품 기안 단계에서부터 관련 중국 법규를 참고하여야 한다.

2) 3단계: 원료선정

2단계에서 선택한 식품유형과 제품 컨셉에 적합한 원재료를 1차 선정하고 선정한 원재료가 아래 중국의 일반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제품에 대한 원재료 선정을 확정해야 한다. 아래는 인삼 일반식품 관련 중국 법규이다.

- ① 중국 식품 성분표
- ②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를 한층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
- ③ 〈신자원식품 원료, 일반식품 관련 목록〉
- ④ 〈GB27601-2011 식품첨가제 사용 표준〉
- ⑤ 〈GB14880-2012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
- ⑥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균종목록》의 인쇄 발행에 관한 위생부판공청의 통지
- ⑦ 〈영유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균종목록 발표에 관한 공고〉



3) 4단계: 제품 디자인 및 라벨설계

인삼 일반식품의 경우 다른 일반식품과 달리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제품명, 포장, 라벨 등에 대한 규제가 중국 법규에 의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한다. 인삼 일반식품의 디자인 및 라벨설계에 대한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본 매뉴얼 후반부의 예비라벨 심사과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 ① 포장형태: “캡슐 등 제품의 시장 진입 범위 잠정 제외에 관한 지시”에 대한 회신
- ② 라벨설계 및 심사: 〈수출입식품 라벨 관리 방법〉, 〈GB7718-2011 사전 포장 식품라벨통칙〉, 〈GB28050-2011 사전 포장 식품 영양 라벨 통칙〉, 〈QB/T 4003-2010 식용 향미료 라벨 통용 요구〉

4) 5단계: 제품생산 및 QC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국수출 제품은 해당 유형의 국가표준이나 지방, 기업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인삼 일반식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 연근 증명 및 GMP 생산 설비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성 관련 증빙을 보유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 OEM 공장에서 생산 시 “생산허가심사세칙”에 따른 생산 및 제조가 필요하며, 공장환경, 설비 및 완제품 분석 결과는 해당 생산허가 심사세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고의 인삼 일반식품을 수출한다는 생각으로 생산 제품의 영양성분 및 유효기간 등의 제품 QC에 관련된 내용도 신경을 써야 한다.



6. 인삼 일반식품 수출통관 프로세스

수출용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해서 중국 수출 적합 인삼제품이 이미 있으며, 중국에서 수입을 원하는 바이어가 있어 계약이 성사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라서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6-1. 수출 준비과정

1) 중국 정부에 한국 수출상/대리상 및 중국수입상/대리상 기업등록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행한다.

○ 구비서류 : 인터넷 등록(<http://ire.eciq.cn/>)



○ 중국 관계기관 : 각 출입국검험검역국

2) 예비 라벨심사 및 등록

필수 과정은 아니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단계로 대부분의 중국수출기업은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CCIC Korea (중국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기관으로 국가질검총국(AQSIQ), 중국인증인가위원회(CNCA) 및 중국합결평정인가위원회(CNAS)의 비준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국 해관에서 인가한 수출입 제품의 민간 감정평가기관이다. CCIC Korea에서 심사 및 수정 통과된 제품 라벨은 반드시 통관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통관에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CCIC Korea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company name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and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Korea Co., Ltd.' with language options for Chinese, Korean, and English. The main navigation bar lists services: 회사소개 (Introduction), 뉴스공지 (News and Notice), 중국인증 (China Certification), 국제인증 (International Certificate), 감정업무 (Verification Service), 검사업무 (Inspection Service), 검증업무 (Testing Service), 온라인신청 (Online Application), 회원서비스 (Customer Service), and 사원BSS (Staff Corner). The main banner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argo ship with the text '公正诚信 准确可靠' and '为全球客户提供质量一致的服务'.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뉴스' (News) and '공지' (Notice), 'CCIC 주요업무' (CCIC Main Business) with icons for CCC, CEC, and other certifications, and '교육 및 세미나' (Education and Seminar) with a 'BUSINESS RECOMMEND'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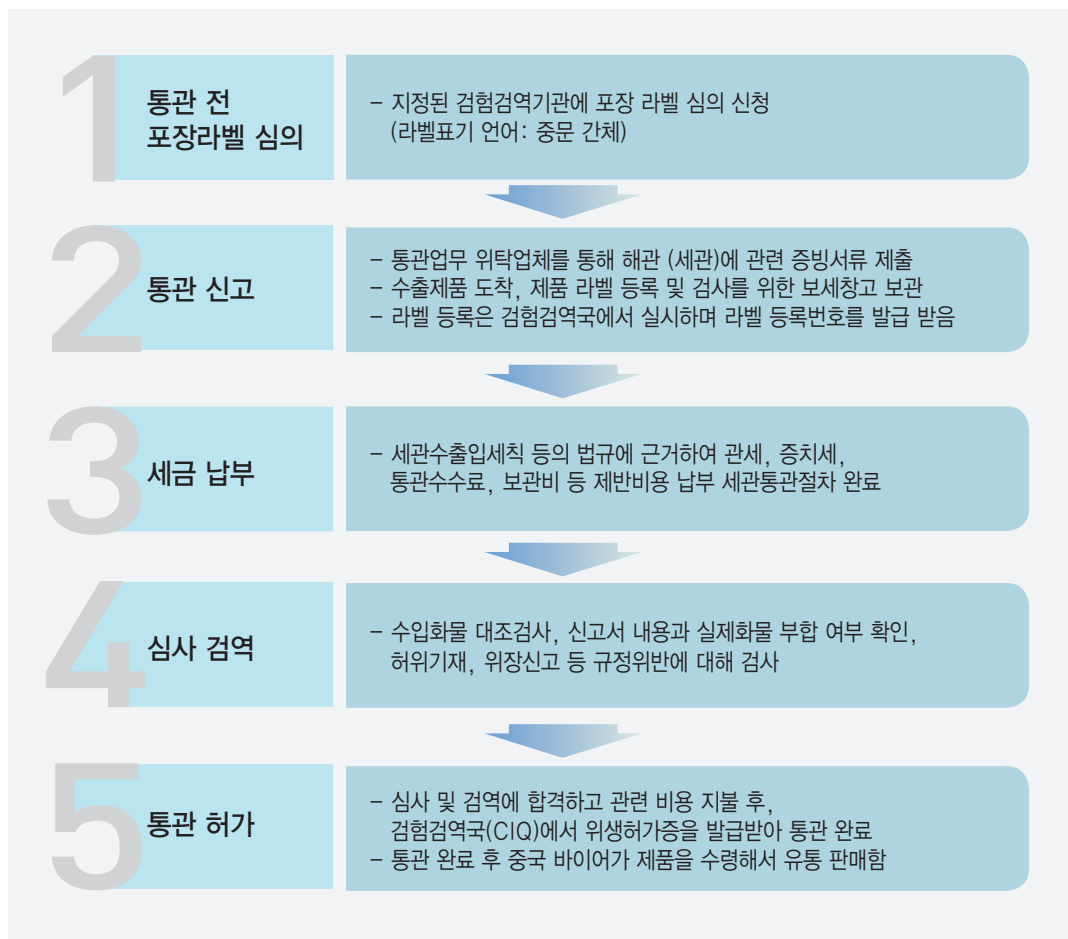
- 구비서류: 제품 배합비, 한국어 라벨, 번역 라벨, 중국어 라벨, 제품 샘플
- 소요비용: 건당 180만원 (부가세 별도)
- 등록결과물: 증서 <수입식품라벨 컨설팅 보고>



현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는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예비라벨 심사비용의 70~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외, 우리나라나 중국에 있는 대행업체를 통해 라벨 제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중국 법규를 잘 인지하고 있는 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6-2. 수출 통관과정

예비 라벨 심사과정을 국내에서 완료하여 라벨 수정이 완료된 이후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⁴



⁴ 황충조, 2014, 중국의 식품통관절차 및 유의점



1) 통관 전 포장라벨 심의

① 포장라벨 심의 제출서류

- ▶ 수입 식품라벨 심의 신청서
- ▶ 식품라벨상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 식품생산과정, 라벨상의 수치근거(검험기관의 검험결과서, 품질분석 보고) 및 검험방법
- ▶ 작용 효능 성분, 상관 증명자료 및 검험방법
- ▶ 식품견본
- ▶ 생산국에서 발행한 제품의 생산, 판매허가증 및 위생허가증(혹은 문건)
- ▶ 칼라 프린트한 식품라벨 견본 8부(원문과 중문, 단, 라벨견본 제출이 힘든 경우 사진으로 제출)
- ▶ 수출국의 식품라벨에 관한 규정
- ▶ 기존 라벨은 라벨심의 및 등록 증명자료 제출

② 심의기간: 접수기관(10일), 1차 심의기간(30일) 등 총 45일(공휴일 제외)

③ 심의비용: 식품 종류당 약 300위안

④ 라벨심의 기관

1차	2차
북경검험검역국식품검험감독처 상해검험검역국위생감독처 광둥검험검역국위생감독처 중국검험유한공사(검측중심)	국가출입검험검역국 표준법규중심수출입식품표지등기관공실

2) 통관 신고

① 통관 시 제출서류

- ▶ 기본: 상품명세서(INVOICE),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빙
- ▶ 특수: 검험검역국 식품검역소 발급 “식품위생검역증서”
- ▶ 예비: 수출입계약서, 식품원산지증명서, 식약처 발급 자유판매증명서, 식품 시험성적서, 영양성분표, 수입회사사업자등록증 등

3) 세금 납부

① 각 지역 세관

② 한국산 식품 수입관세는 대부분 5~35%로 책정돼 있으며, 별도로 규정된 식품 외에는 17%의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주류인 경우는 소비세가 부과됨

4) 심사 검역

① 검험기관

- ▶ 각 지역 출입검험검역국식품안전감관처 통관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수입 유통업자를 거쳐 판매가 진행되는데, 판매업자의 수입제품 판매 허가증의 보유 및 갱신 여부를 중국 공장국에서 관리 감독하게 된다.

제3부
인삼신자원식품수출
및
라벨심사사례





제3부 인삼 신자원식품 수출 및 라벨 심사 사례

7. 수출 사례

본 연구팀에 참여한 경기인삼공상의 농협 천경삼 제품 수출과 중소기업 (주)카인즈의 인삼음료개발의 예를 들어 제품 개발, 라벨 제작 등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7-1. 중국 수출용 인삼음료 개발

1) 신제품 개발

인삼의 경우 대부분 식물 음료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데, 신제품 개발에 대한 컨셉이 정해지면, 식품 유형과 원료 검토를 확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배합비를 확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파우치 형태의 인삼음료를 개발할 경우 아래와 같이,

- ① 식품유형: <표D.1 식품 유형(명칭)>에 의한 제14종 음료류(식물음료)를 참조하고,
- ② 원료검토: <중국식품성분표 2, 3>,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를 한층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에 의한 일반식품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및 사용량을 확인한 후,
- ③ 소비자 선호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 제품 배합비 확정 등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다음은 사업단 참여기업이 적용한 예이다.

번호	한글 원료명	함량(%)
1	정제수	*
2	과당	*
3	복분자농축액	5
4	마카농축분말	1.5
5	헛개나무농축분말	1.5
6	인삼농축액	0.8
7	허브향	*
8	구연산	*
9	산화아연	0.002
10	비타민B6염산염	0.00015
총		100

2) 기존 제품 개선

국내 생산, 판매 중인 기존 제품의 중국 신자원식품 수출은 원료 검토에서 신제품 생산과 유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며, 경기농협 인삼 연합 사업단 브랜드 천경삼 홍삼-G의 경우,



원료삼을 5년근 이하로, 중국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숙지황, 영지 등을 배제하고 제품을 생산하였다.

중국 수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 모두의 경우 aT나 CCIC Korea에 원료 성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라벨 예비심사 과정을 단축하는 좋은 방법이다.

3) 수출용 라벨 제작

파우치 형태의 제품 경우, 라벨의 제작이 제품, 포장 디자인과 병행되어야 하며, 병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접착 라벨을 따로 제작할 수 있다. 아래는 중국에 인삼 일반식품으로 수출된 천경삼 제품의 최종 라벨이다.



사업팀 개발 제품의 경우 파우치 형태의 포장 디자인을

- ① <캡슐 등 제품의 시장 진입 범위 잠정 제외에 관한 지시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선정 하였으며,
- ② <GB7718-2011 예비 포장식품라벨통칙>, <GB28050-2011 예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 <QBT 4003-2010 식품향미료통용요구>에 따라 라벨 설계를 진행하였다.
 - ▶ 천경삼브랜드 '홍삼G'의 경우, 중국 수입업자가 중국 현지에서 제품 라벨 제작을 협조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CCIC에 유료 자문을 요청하게 된다.
 - ▶ 한국 CCIC 라벨 심사 신청 관련하여서는 라벨 심사신청 시 통상적으로 라벨심사를 위한 제품 원료 검토를 요구한다.
 - ▶ 인삼제품의 라벨 검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영문), 인삼은 연근 판별을 위한 경작증명서 등의 첨부가 필요하며, 대부분 중국 식품법에 따르는 용어를 중국어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 되며, 영양성적서 등의 발급을 요구한다.



4) 수출 통관용 생산

■ 경기 인삼농협의 제품에 대한 사례

날짜	진행 현황	특이사항
Day 1	- 중국 통관용 홍삼-G 6천 병 생산 *소량 생산 가능 새로운 공장에서 중국 라벨 등록과 동일하게 생산 - 중국 선적 전 중국측 4개 서류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제품생산 일자에 대한 증명서, 재료에 대한 규격) 요청 - 4개 서류 중 두가지 서류 발급을 할 수 없어 기존 생산 공장으로 의뢰	수출 통관서류를 감안 생산기업의 선택에 유의
Day 50	- 태백인삼농협에서 5만 병 생산 - 이 중 4천 병(1파렛) 중국으로 수출 진행 - 중국 선적 전 중국측 6개 서류 (Proof of Manufacturing date, Fumigation certificate, Heal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Origin, Shipping documents, Documents like invoice, packing list)요청	Fumigation certificate 서류는 목재 파렛트가 아닌 플라스틱 파렛트 사용으로 제외
Day 60	- 중국 베이징 최종 도착지로 출항 (LCL)	
Day 60~74	- 6가지 서류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원본을 중국으로 송부	
수출항 도착 후	- 3회 이상의 보완서류 제출	담당 관세사에 따라 요구 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식약처 발행 GMP 생산 증명서생산 즈며
오느 오느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유승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illegible]

Name of product	Nature of the food	Quantity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
KOREAN RED GIN SENG C DRINK	Ginseng, Red Ginseng Beverages	4000 EA	2015.06.11

[illegible][illegible][illegible]

COMMERCIAL INVOICE		B/L no. of Invoice B00C100017	
1. Exporter Peace Shipping Company (Singapore) Pte. Ltd. 40, Cantonment Road, Singapore 06 Tel: 339 2222 Fax: 339 2221		2. Remarks : 3. Applicant 4. Beneficiary 5. Bank 6. Trade Term 7. Incoterms 8. Port of loading 9. Port of destination 10. Commodity 11. Quantity 12. Unit 13. Rate 14. Amount 15. Signature 16. Date 17. Place 18. Signature 19. Date 20. Place 21. Signature 22. Date 23. Place 24. Signature 25. Date 26. Place 27. Signature 28. Date 29. Place 30. Signature 31. Date 32. Place 33. Signature 34. Date 35. Place 36. Signature 37. Date 38. Place 39. Signature 40. Date 41. Place 42. Signature 43. Date 44. Place 45. Signature 46. Date 47. Place 48. Signature 49. Date 50. Place 51. Signature 52. Date 53. Place 54. Signature 55. Date 56. Place 57. Signature 58. Date 59. Place 60. Signature 61. Date 62. Place 63. Signature 64. Date 65. Place 66. Signature 67. Date 68. Place 69. Signature 70. Date 71. Place 72. Signature 73. Date 74. Place 75. Signature 76. Date 77. Place 78. Signature 79. Date 80. Place 81. Signature 82. Date 83. Place 84. Signature 85. Date 86. Place 87. Signature 88. Date 89. Place 90. Signature 91. Date 92. Place 93. Signature 94. Date 95. Place 96. Signature 97. Date 98. Place 99. Signature 100. Date 101. Place 102. Signature 103. Date 104. Place 105. Signature 106. Date 107. Place 108. Signature 109. Date 110. Place 111. Signature 112. Date 113. Place 114. Signature 115. Date 116. Place 117. Signature 118. Date 119. Place 120. Signature 121. Date 122. Place 123. Signature 124. Date 125. Place 126. Signature 127. Date 128. Place 129. Signature 130. Date 131. Place 132. Signature 133. Date 134. Place 135. Signature 136. Date 137. Place 138. Signature 139. Date 140. Place 141. Signature 142. Date 143. Place 144. Signature 145. Date 146. Place 147. Signature 148. Date 149. Place 150. Signature 151. Date 152. Place 153. Signature 154. Date 155. Place 156. Signature 157. Date 158. Place 159. Signature 160. Date 161. Place 162. Signature 163. Date 164. Place 165. Signature 166. Date 167. Place 168. Signature 169. Date 170. Place 171. Signature 172. Date 173. Place 174. Signature 175. Date 176. Place 177. Signature 178. Date 179. Place 180. Signature 181. Date 182. Place 183. Signature 184. Date 185. Place 186. Signature 187. Date 188. Place 189. Signature 190. Date 191. Place 192. Signature 193. Date 194. Place 195. Signature 196. Date 197. Place 198. Signature 199. Date 200. Place 201. Signature 202. Date 203. Place 204. Signature 205. Date 206. Place 207. Signature 208. Date 209. Place 210. Signature 211. Date 212. Place 213. Signature 214. Date 215. Place 216. Signature 217. Date 218. Place 219. Signature 220. Date 221. Place 222. Signature 223. Date 224. Place 225. Signature 226. Date 227. Place 228. Signature 229. Date 230. Place 231. Signature 232. Date 233. Place 234. Signature 235. Date 236. Place 237. Signature 238. Date 239. Place 240. Signature 241. Date 242. Place 243. Signature 244. Date 245. Place 246. Signature 247. Date 248. Place 249. Signature 250. Date 251. Place 252. Signature 253. Date	



6) 통관 완료 후, 세금 납부

GS01 北京 海关 进口增值税 专用缴款书 (1508)
收入系统: 税务系统 填发日期: 2015 年 8 月 4 日 号: 011820151185030001-102 01182015118503000102

收入机关: 中央金库	名称: 惠州市通扬实业有限公司
科目: 进口增值税	预算级次: 中央
收款国库: 中国工商银行王府井金库支行	开户银行:
税号: 1-2202000000	货物名称: 大青参神大参植物饮料
数量: 600.00 升	完税价格(¥): 7,288,346.17
税率(%): 17.0000	税款金额(¥): 1,238.81

金额人民币(大写): 壹仟贰佰叁拾捌元陆角壹分 合计(¥): ¥1,238.81

申请单位编号: 1105980110 报关单编号: 011820151185030001 填制单位: 收款国库(库)

合同(批文)号: 011820150601 运输工具(号): 41502170118506847

缴款期限: 2015年8月19日前 提/报单号:

一般贸易 照章征税 2015-6-27 制单人: 012329

备注: 国际代码: 441302678871651USD 6.1152 1,888.95 复核人

从填发缴款书之日起限15日内缴清(期末通法定节假日顺延),逾期按日征收税款总额万分之五的滞纳金。

GS01 北京 海关 进口关税 专用缴款书 (1508)
收入系统: 海关系统 填发日期: 2015 年 8 月 4 日 号: 011820151185030001-A01 01182015118503000101

收入机关: 中央金库	名称: 惠州市通扬实业有限公司
科目: 进口关税	预算级次: 中央
收款国库: 中国工商银行王府井金库支行	开户银行:
税号: 1-2202000000	货物名称: 大青参神大参植物饮料
数量: 600.00 升	完税价格(¥): 7,288,346.17
税率(%): 17.0000	税款金额(¥): 1,238.81

金额人民币(大写): 壹仟贰佰叁拾捌元玖角伍分 合计(¥): ¥1,888.95

申请单位编号: 1105980110 报关单编号: 011820151185030001 填制单位: 收款国库(库)

合同(批文)号: 011820150601 运输工具(号): 41502170118506847

缴款期限: 2015年8月19日前 提/报单号:

一般贸易 照章征税 2015-6-27 制单人: 012329

备注: 国际代码: 441302678871651USD 6.1152 1,888.95 复核人

7) 위생검역서 발급 : 중국 현지 판매를 위해서 위생검역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检验检疫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编号: 011820151185030001

收货人: 惠州市通扬实业有限公司	发货人: SCORBA OFFSHORE GOVERNMENT OVERSEAS CORPORATION
品名: 大青参神大参植物饮料	数量/重量: **400.00
包装种类及数量: 400箱	输出国家或地区: 韩国
合同号: DT3M1185001	标记及号码:
提/运单号: FHO022919	
入境口岸: 天津口岸	
入境日期: 2015/07/09	

证明: 上述货物经检验检疫合格,准予进口。
产地: 韩国 数量: 400箱 生产日期/保质期: 2015.06.11/12月

签字: [Signature] 日期: 2015 年 7 月 10 日

备注: 5132001.1.01-11 ② 货主收执



8) 현지 판매





8. 예비 라벨 심사 과정

대중국 인삼식품 수출 시 중국 항구에 도착한 후 세관통관 수속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CIQ의 포장 라벨 심사를 받아야 한다. 라벨은 중국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에 부합해야 하며, 심사 항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행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인삼 수출 연구팀에서 2015년에 두 개의 인삼 신제품(고려미인, 이지대디)을 개발하고, 국내CCIC Korea에 위탁하여 예비 라벨 심사를 받은 사례를 설명 하였다.

8-1 개발제품 고려미인 라벨심사

1) 품명

‘고려미인’이란 품명의 문구가 음용시 아름다워 질수 있다는 암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품명 변경 건의를 받았다. GB7718-2011 3.4, 3.5의 조항에 의하면 사실에 기반하고 정확해야 하며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려미인’이란 이름은 과장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GB14880-2012 식품분류표에 ‘고려미인’의 정확한 유형은 풍미음료(과일맛, 밀크맛, 차맛, 커피맛, 및 기타맛 음료 포함)에 속하므로, xx브랜드 xx맛 음료로 변경 건의를 받았다.



〈고려미인 품명 검토〉

한글명	고려미인
변경 전	高丽美人(고려미인)
변경 후	易参 人参 西印度针 叶樱 桃果味饮料 (이지인삼아세로라 맛 음료)
변경 사유 및 근거	• GB7718-2011 3.4, 3.5조항)표현이 과장됨. • GB7718-2011에 의해 식품명은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반영한 전용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2) 원료명

원료명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정확한 중국식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안된다. ‘인삼농축액’은 중국식 표현인 ‘농축 인삼즙’으로 표시해야 한다.

■ 고려미인 원료명 표시 검토

	한글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근거
인 미 인	물	纯净水(정제수)	水(물)	• GB7718-2011 (예비포장식품표준 통칙) 참고 • GB10789-2007 (음료통칙) 정확한 중국식 표시 요구
	과당	果糖	果糖	
	농축적포도주스	红葡萄汁浓缩液(농축적포도액)	浓缩红葡萄汁(농축적포도즙)	
	석류농축액	石榴浓缩液(석류농축액)	浓缩石榴汁(농축석류즙)	
	피쉬콜라겐	鱼胶原蛋白(피쉬콜라겐)	淡水鱼胶原蛋白肽粉(피쉬콜라겐)	
	β-시클로덱스트린	环糊精(시클로덱스트린)	β-环状糊精(β-시클로덱스트린)	
	벌꿀	蜂蜜	蜂蜜	
	인삼농축액	人参浓缩液(인삼농축액)	浓缩人参汁(농축인삼즙)	
	아세로라	针叶樱桃果浓缩液	西印度针叶樱桃汁	
	구연산	柠檬酸	柠檬酸	
	구아검	瓜尔胶	瓜尔胶	

3) 영양성분표

영양성분표에 있는 5대 영양소(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를 굵게 표시해야 한다.

■ 영양성분표

항목	100 ml 기준	영양소 참고 차%
열량	199 KJ	2%
단백질	0g	0%
지방	0g	0%
탄수화물	11.7g	4%
나트륨	14mg	1%
비타민B6염산염	0.14mg	10%
아연	1.29mg	9%



8-2 개발제품 이지대디 라벨심사

1) 품명

이지대디 포장에 ‘건강한 임신’, ‘건강한 태아’, ‘예비아빠의 필수품’ 문구는 보건식품을 암시하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건의를 받았다.

■ 이지대디 파우치 라벨 심사

품명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이지대디	앞면			• GB 7718-2011에 의해 ‘건강한 임신, 건강한 태아, 예비아빠의 필수품’ 문구 삭제; • ‘사진은 참고만 하세요’ 문구 추가 • ‘순함량: 30ml’ 글높이 $\geq 2\text{mm}$
	뒷면			• GB 7718-2011에 의해 배합표의 원료 명을 함량 내림차 순서로 나열 • 음용 부적합 인군 표시

- ① 인삼과 마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원식품관리방법》에 따라 식용 부적합 인군(대상자) 하루 섭취량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② 판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③ 생산날짜와 유통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날짜를 표시할 때 년도는 4자리, 월, 일은 2자리로 표시해야 한다.
- ④ 8-2011 4.1.2.2.1 조항에 의해 만약 상표명이 식품의 속성을 오해 할 문구를 사용할 때 상표 명칭 옆에 같은 크기의 상품 속성을 설명한 전문 명칭을 같이 표시를 해야 한다.



9. 인삼 신자원식품 수출 유의점

■ 제품 개발 1-2단계 (제품 유형 및 규격 확인)

- 인삼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유형 및 제품명이 중국 법규와 다르기 때문에 제품 기안 단계에서부터 관련 중국 법규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품 개발 3단계 (원료선정 및 설계)

- 선택한 식품 유형과 제품 컨셉에 적합한 원재료를 1차 선정하고 선정한 원재료가 중국의 일반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제품에 대한 원재료 선정을 확정해야 한다.

■ 제품 개발 4단계 (디자인 및 라벨 설계)

- 인삼 일반식품의 경우 다른 일반식품과 달리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제품명, 포장, 라벨 등에 대한 규제가 중국 법규에 의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제품 개발 5단계 (제품 생산 및 QC)

- 인삼 일반식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과 GMP 생산 설비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성 관련 증빙을 보유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 OEM 공장에서 생산 시 “생산허가심사세칙”에 따른 생산 및 제조가 필요하며, 공장환경, 설비 및 완제품 분석 결과는 해당 생산허가 심사세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생산 제품의 영양성분 및 유효기간 등의 제품 QC에 관련된 내용도 신경을 써야 한다.

■ 통관 단계

- 시제품의 양을 최소화하여 통관을 진행해 본 후 다량의 본제품을 수출, 통관하는게 비용과 시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국 인삼 신자원식품 수출 매뉴얼

발행일 제1판 1쇄 발행 2016년 7월 13일

저자 한재홍

총괄기획 대중국농식품수출적용기술모델개발사업단
인삼모델개발사업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809동 4353호

전화 031-670-4830

발행인 최황휴

발행처 도서출판 빅벨

등록 제25100-2005-29호



ISBN 978-89-85528-73-3

비매품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809동 4353호
대중국농식품수출적용기술모델개발사업단 인삼모델개발사업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031-670-4830
www.webofginseng.com